

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

중소기업청 올해 총 3조원 규모, 업체당 50억원 한도 지원

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10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'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'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(15개) 등에서 신청·접수를 받는다. 지원되는 자금의 내용별로는 구조개선자금 1조 7,500억원, 중소·벤처창업자금 3,500억원,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5,100억원,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800억원,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700억원,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2,400억원 등이다.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에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. 신청서식은 중소기업청(<http://www.smba.go.kr>) 및 중소기업진흥공단(<http://www.sbc.or.kr>)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. 본 고에서는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. | 편집자 주

공통사항

★ 지원기준

가.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(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)

※ 금융, 보험업, 부동산업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사치향락적 소비자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

나. 지원제한

-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 (www.sbc.or.kr의 자금지원 안내 참조)을 초과하는 기업 (협동화 사업은 실천계획 승인신청시 기준)

※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

- 업력 3년 미만,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%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, 특별경영안정사업 지원대상인 기업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, 매출

액이 10% 이상이고 5천만원 이상인 기업,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사업자

-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(협동화사업은 예외)

※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㎡ 미만인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간주

-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우량 중소기업

-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(특별경영안정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제외)

-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

★ 지원한도 :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

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50억원 (또는 매출액의 125%)

※ 구조개선사업(시설), 지식기반 서비스육성사업(시설), 중소·벤처창업 자금의 경우는 잔액기준 한도만 적용

★ 지원방식 :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신청·접수하여 보증서부 또는 순수 신용대출 : 특별경영안정사업,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, 수출금융지원사업 등

※ 중소·벤처창업자금의 보증서부 대출은 기술 신용보증기금(기술평가센터)에서 직접 신청·접수, 소액보증에 한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직접 신청·접수 가능

★ 신청·접수기간 : 2005. 1. 10~ 자금소진시까지

※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



정한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지원 센터에서 접수·추천

자본잠식기업 등

금은 5억원)/지식기반서비스 업육성사업 : 업체당 연간 총 1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
- 지원방법 : 중소기업진흥공간이 신청·접수·지원결정 후 담보부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 또는 순수신용

구조개선자금

*** 사업목적** :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

*** 지원규모** : 17,500억원

* 지원대상

가. 구조개선사업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
- 지원제외업종 : 사치향락, 건설, 소매업 등(www.sbc.or.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)

- 다만, 제조업 전업률 30% 이상 업체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업체 중 지원대상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

나.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 :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지식기반서비스업(전업률 30% 이상, 단, s/w업종은 예외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
다. 특별경영안정사업 :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중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% 이상 피해, 거래 금융기관 또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 발생, 사업성, 기술성은 있으나 업종별 지원제한부채비율 초과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 신청이 어려운 기업, 최종부도 발생기업, 금융기관·신용보증불량기업, 화의 법정관리 진행중인 기업,

* 지원범위

가. 구조개선사업

- 생산설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
- 기업간 인수·합병 추진 자금 등 구조조정자금
-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및 구조조정(개발기술도입비등)을 위한 운전자금

나. 지식기반서비스육성사업

-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확보 및 시설자금
- 원부자재 구입비용,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

다. 특별경영안정사업

- 재해,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
* 지원조건

가. 구조개선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

- 대출금리 : 4.4%,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4.9% 이내,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(시설, 운전자금)의 신용 대출은 4.4%(변동금리)

※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은 4.4%(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4.9%)

- 대출기간 : 시설자금 8년 이내 (거치기간 3년 포함) 운전자금 3년 이내 (거치기간 1년 포함)
- 대출한도 : 구조개선사업 :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(운전자

다. 특별경영안정사업

- 대출금리 : 회생특례자금 7.9%, 원부자재구입자금 4.9%(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5.4%), 재해복구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(변동금리)
- 대출기간 :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 포함)
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원(원부자재구입자금은 5억원)
- 지원방법 : 신용 및 신용보증서로 중소기업진흥공간이 직접대출(기업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)

*** 신청·접수기간** :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중소·벤처창업자금

*** 사업목적** :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

*** 지원규모** : 3,500억원

* 지원대상

- 창업을 준비 중인 자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·접수일

정책자금정보

기준)인 중소기업

- ※ 지원제한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(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도박장 운영업, 미용·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)

★ 지원범위

- 생산·연구시설, S/W, 중고 시설, 사업장확보자금, 건축공사비(토지구입비 제외) 등
- 연구개발비용,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

★ 지원조건

- 대출금리 : 연 4.4%,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은 4.9% (변동금리)
- 대출기간 : 시설자금은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/운전자금은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
- 지원절차 :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(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·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후 직접 대출), 신용보증부 대출(신용보증기관이 신청·접수와 함께 보증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심사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조건에 따라 직접 대출)

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

★ **사업목적** : 서비스산업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지원

★ **지원규모** : 5,100억원

★ 지원대상

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- 도·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(*지원제외 대상 : 금융·보험업,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)

★ **지원범위** :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

★ 지원조건

- 대출금리 : 연 5.4%(변동금리)
- 대출한도 : 5천만원
- 대출기간 : 5년(거치기간 1년 포함)
- 상환방식 :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%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%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
- 대출취급은행 : 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, 외환, 조흥, 한미, 하나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은행, 농협
- 지원방법 :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

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

★ **사업목적** :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·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

★ **지원규모** : 800억원

★ 지원대상

- 제조업, 제조업관련 서비스업,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: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, 중소기업청 선정 Inno-Biz 업체 보유기술

※ 기술혁신개발사업등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과 Inno-Biz 업체는 우대

-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

※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중인 기술 포함

- 국내외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

-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

★ 지원범위

- 개발기술의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, 시험검사설비 등

-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개척비용 등

★ 지원조건

- 대출금리 : 연 4.4%(변동금리)
- ※ 신용등급 'C' 를 기준금리 (4.4%)로 하고 'C' 보다 우수등급일 경우 -0.5%p 할인금리, 아래등급일 경우 +0.5%p 할증금리 적용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5억원(운전자금은 3억원)
- 지원방법 :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청·접수를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 및 순수신용 직접대출 실시

수출금융 지원자금

★ 사업목적 :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발전 도모

★ 지원규모 : 700억원

★ 지원대상 : 수출계약 중소기업 (* 수출유망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업체 우대지원)

★ 지원범위

-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: 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(L/C, D/A, D/P, Local L/C, T/T, M/T, 구매확인서, O/A)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(수출계약액

의 90% 이내)

- 실적기준 포괄금융 :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/2 이내로 5억원 한도
- (* 실적기준 포괄금융이용업체는 2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장기준 포괄금융과 병행 지원)

★ 지원조건

- 지원금리 : 연 4.6%(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)
- 지원기간 : 180일 이내(실적기준 포괄금융-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/신용장기준 포괄금융-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)
- 지원방식 :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 전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으로 지원

협동화 자금

★ 사업목적 :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, 공해방지 시설,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

★ 지원규모 : 2,400억원

★ 지원대상 : 아래 지원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

- ※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4조에 의한 공동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경우

지원 우대

- ※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없이 신청 가능
- ※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는 참가업체수의 1/2범위 이내로 제한
- ※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, 휴·폐업 중인 자, 실천계획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★ 지원범위

- 시설자금 : 건물·부지매입비, 임차보증금,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(추진주체 50억원 이내, 참가업체 40억원 이내)
- 운전자금 : 사업장 준공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(추진주체는 10억원 이내,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)
- 협업화 자금 : 판로개척, 원자재 구매, 기술개발, 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(추진주체 30억원 이내, 참가업체 20억원 이내)

★ 지원조건

- 대출금리 : 연 4.4%(변동금리)
- 대출기간 : 시설자금은 10년(거치기간 5년 포함)/운전자금 및 협업화 자금은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


문의 및 신청 · 접수기관 연락처

★ 중소기업청

표 1 참조

★ 중소기업진흥공단

표 2 참조

★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

표 3 참조

★ 지역신용보증재단

표 4 참조

★ 인터넷 이용 안내

표 5 참조

『광학세계』 원고모집

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간하는 '광학세계'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

'광학세계'에 관심을 갖고 계신 관련업체, 학계, 연구계 및 개인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... 원고모집 안내 ...

1. 원고내용 : 연구논문, 회사소개, 제품소개, 국내·외 기술동향, 이달의 독자, 수필 등
2. 원고분량 : 제한 없음
3. 원고마감 : 수시 접수중

※ 기사로 활용할만한 좋은 소재를 알고계신 경우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취재하겠습니다.

• 연락처 : 한국광학기기협회 '광학세계' 편집부

• Tel. (02)3481-8931

• Fax. (02)3481-8669

표 1. 중소기업청

지방중기청	전 화	지방중기청	전 화
서울	02)509-7018/9	경기	031)201-6800/2
충북	043)230-5300	부산·울산	051)601-5111
대전·충남	042)865-6100	전북	063)210-6400
대구·경북	053)626-2601	인천	032)818-8321
경남	055)268-2511	광주·전남	062)360-9109
강원	033)260-1600	제주	064)723-2101

표 2. 중소기업진흥공단

지역본부	전 화	지역본부	전 화
서울	(02)769-6602/8	대전·충남	(042)866-0114
울산	(052)277-3283	부산	(051)630-7431/5
충남출장소	(041)531-7493/4	강원	(033)256-9611/3
대구·경북	(053)601-5273/9	경기	(031)259-7921/9
원주출장소	(033)735-3344	인천	(032)450-0522/4
경기·북부	(031)920-6723/6	강릉	(033)646-9967/8
광주전남	(062)600-3017/9	충북	(043)230-6812/4
전북	(063)210-9922/4	경남	(055)269-5821/4
제주	(064)751-2055/7		

표 3.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

지역	전화번호	지역	전화번호
서울	(02)789-9287/789-9297	광주	(062)361-0630
서울(강남)	(02)567-6800	서울(강동)	(02)3401-4025
서울(중부)	(02)754-3591	대전	(042)483-2993/6
부산	(051)466-4115	경기	(031)215-1560
대구	(053)424-6970	인천	(032)438-9080

표 4. 지역신용보증재단

지역	전화번호	지역	전화번호
서울	(02)563-0673	경기(수원)	(031)259-7700
부산	(051)831-1183	강원(춘천)	(033)251-1353
대구	(053)554-5300	경남(창원)	(055)263-2262/4
인천	(032)260-1500/3	경북(구미)	(054)474-7100
광주	(062)950-0011	전남(순천)	(061)743-0365
대전	(042)864-1701/6	충남(아산)	(041)541-9833
울산	(052)289-2300	충북(청주)	(043)236-2691
제주	(064)758-5740		

표 5. 인터넷 이용 안내

- 중소기업청 : www.smba.go.kr
- 중소기업진흥공단 : www.sbc.or.kr
- 기술신용보증기금 : www.kibo.co.kr
- 정책자금안내시스템 : www.finainfo.go.kr
- 소상공인지원센터 : www.sbdc.or.kr